

# 대구대학교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지역사회 보건의료 인재 양성  
및 상생협력·발전을 위한

## 업무협약서



대구대학교 간호대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지역인재 양성 및 상생협력·발전 등 업무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상생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① 지역 보건의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
- ②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
- ③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활동
- ④ 기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협력사업

**제3조(협약기간)** ① 본 협약은 2부의 협약서 원본에 양 기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,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협약의 해제·유지)**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홍보) ① 양 기관은 정보교환 또는 협력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·배포 시 사전 통보한다.

②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·배포하고,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.

제6조(비밀의 유지)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. 만약,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7조(법적구속력 배제) 제8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제8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4월 21일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총장직무대행 박 상 규

박 상 규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 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대구지원장 황 대 능

황 대 능